

문경관광진흥공단 취업규칙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  
2023. 06. 30.

##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

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제246호

### 문경관광진흥공단 취업규칙 중 일부개정 규정(안)

문경관광진흥공단 취업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근무시간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근무시간) ①임·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18세 미만의 직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한다.

제17조(특별근무명령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(특별근무명령) ①임·직원에게는 공단업무 수행상-----  
-----를 명할 수 있다. 단, 18세 미만자는 1일 1시간,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,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, 1주 6시간,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,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.

제23조(연차휴가) 제1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(연차휴가) ①연차유급휴가는 공단의 회계기준일(1.1)로 계산하며, 1년간